

「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」 안내 및 참가자 모집 공고

법무부는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통과하여 난민통역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하는 「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026년 「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」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6월 4일
법무부장관

1 난민전문통역인

-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(난민법 시행령 제8조)
 - ※ 위촉기간 3년, 재인증 절차를 통해 재위촉 가능
- 난민전문통역인은 지역에 상관없이 인재 풀(pool) 형태로 관리되며 난민심사 시 우선적으로 통역업무를 수행

2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

난민심사의 통역 품질 향상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및 시험을 통과하여 난민통역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

※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수행기관: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

3 난민전문통역인 인증 절차 일정

※ 참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순서	과정	시기	내용
1	통역능력선별시험 (온라인)	'26. 6월	언어별 듣기·말하기 능력 평가
2	수준별 맞춤형 교육 (온라인)	'26. 7~8월	선별시험 결과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언어능력별로 통역 기법, 통역 윤리, 기초법률 및 지식 등 교육
3	인증시험 (오프라인)	'26. 9월	대화통역, 순차통역, 시역, 배경지식 및 윤리 능력 평가
4	보수교육	'26. 10~11월	난민통역을 위한 문화 이해, 전문언어 숙달 등으로 구성
5	위촉	'26. 12월	인증시험 합격자를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

4 모집분야 및 예정인원

※ 참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모집분야	담당업무	모집인원	모집언어
난민전문통역인	난민심사 관련 통역·번역	언어별 00명	제한 없음

5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참가 자격

- 한국어와 외국어 간 통·번역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또는 외국인
 - ※ A, B, C, G 계열 및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불가한 체류자격(D-3, E-9 등) 소지 외국인은 제외
-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(붙임 참조)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통역·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
- 그 밖에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6

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참가 신청

▶ 신청 기간: '26. 6. 8.(월) 09:00 ~ '26. 6. 21.(일) 18:00

※ 참가 신청자 수에 따라 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

▶ 신청 사이트: <https://apply.passon.co.kr/moj/>

※ 6. 8.(월)부터 신청 가능

▶ 문의처: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

(☎ 02-2173-3977 또는 2026refugeeinterpreting@gmail.com)

□ 신청방법: 신청 사이트의 안내사항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제출

7

기타

□ 신청서 등에 허위사항 기재 또는 기재착오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□ 현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 중인 사람도 인증제에 참가하여 기존에 인증받은 언어와 다른 언어를 추가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통해 기 위촉된 통역인이 올해 위촉 기간 만료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, 인증제에 참가하여 인증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
【재인증 절차】

▶ 기존 1급 인증 통역인: 인증 절차 중 '통역능력 선별시험'과 '수준별 맞춤형 교육'은 면제되나, '최종 인증시험'에 응시하여 통과하여야 함

▶ 기존 2~3급 인증 통역인: 면제되는 절차 없이 모든 인증 과정을 이행하고 '최종 인증시험'에도 응시하여 통과하여야 함

□ 특정 언어에 참가자가 집중될 경우 언어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모집 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□ 교육 및 시험 안내 등 인증제 시행정보를 주로 e-mail로 공지·안내하니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, e-mail 등을 적시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, e-mail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인증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- ◆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 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◆ 통역·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
- ◆ 그 밖에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